

○ 상생미래대 연계 상생외담대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 – 상환청구권 있음) 개정 대비표

1. 주요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상생미래대 연계 상생외담대 통합약정서 (판매기업용 – 상환청구권 있음)</p> <p>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 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포괄한도거래약정서(기업용)</p> <p>주식회사 하나은행 앞</p> <p>본인은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의 포괄한도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p> <p>제 1 조 거래조건</p> <p>① 본인과 은행은 포괄여신한도 및 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다만, 본인의 여신신청은 각 여신과목별 한도내의 취급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여신종별한도(포괄한도_____ 및 포괄한도_____) 및 총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합니다. 다만, 외화여신과 원화여신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화여신의 원화 환산율은 매 <u>직전일</u>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p> <p>③ 이 약정에서 정한 이자, 수수료 및 지연배상금을 계산할 때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 상관습에 따릅니다.</p> <p>제 3 조 이자율의 변동</p> <p>① 제 1 조의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적용하는 경우 시장금리 또는 단기코픽스금리에 연동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금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p> <p>1. 대출금 실행 직전 영업일의 91일물 CD 유통수익률, AAA 등급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AAA 등급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단기코픽스금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준금리로 적용합니다.</p> <p>2. 이 약정서의 91일물 CD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수익률로 하며, 6개월물 금융채 또는 1년물 금융채의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수익률 중 3개 채권평가회사 통합표의 수익률로 하고 단기코픽스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금리로 합니다.</p>	<p>상생미래대 연계 상생외담대 통합약정서 (판매기업용 – 상환청구권 있음)</p> <p>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 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포괄한도거래약정서(기업용)</p> <p>주식회사 하나은행 앞</p> <p>본인은 <u>주식회사</u>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의 포괄한도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p> <p>제 1 조 거래조건</p> <p>① 본인과 은행은 포괄여신한도 및 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다만, 본인의 여신신청은 각 여신과목별 한도내의 취급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여신종별한도(포괄한도_____ 및 포괄한도_____) 및 총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합니다. 다만, 외화여신과 원화여신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화여신의 원화 환산율은 매 <u>직전영업일의</u>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p> <p>③ 이 약정에서 정한 이자, 수수료 및 지연배상금을 계산할 때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p> <p>제 3 조 대출이자율의 변동</p> <p>① 제1조의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적용하는 경우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에 연동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금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p> <p>1.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란 원화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금 실행 직전 영업일의 91일물CD 유통수익률, AAA등급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AAA등급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단기코픽스금리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하고, 외화대출의 경우에는 LIBOR 1개월물, LIBOR 3개월물, LIBOR 6개월물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합니다.</p> <p>2. 각각의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는 아래의 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p> <p>가. 91일물 CD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수익률</p> <p>나. 6개월물 금융채 또는 1년물 금융채의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p>	<p>문구 수정</p> <p>문구 수정</p> <p>여신거래약정서 (기업용) 약관 반영</p>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p>② 제 1 항의 시장금리 또는 <u>단기코픽스금리</u> 연동대출의 경우 최초 ()개월간은 최초 <u>약정금리를</u>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매 ()개월마다 최초 대출상당일(최초 대출상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 말일) 직전 영업일의 시장금리 또는 <u>단기코픽스금리를</u> 기준금리로 하여 제 1 조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p> <p>제 4 조 중도상환해약금</p> <p>① 본인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약정한 대출기일(기한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함, 이하 같음)전에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상환해약금은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으로 하며, 최초 대출일로부터 ()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률은 ()%로 적용합니다. □ 기타 () <p>② 대출잔여일수 등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도록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출잔여일수」는 상환방법에 상관없이 상환일로부터 약정한 대출기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대출기간에서 경과일수(최초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일수)를 차감하여 구합니다. 2.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약정한 대출기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되, 3년이 초과하더라도 3년(일수)으로 정합니다. 3. 중도상환해약금은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이내로 적용합니다. <p>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출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외화대출을 타 통화(원화 포함)로 대환하는 경우 3. 담보물건의 공용수용 등 공익목적 국가사업 추진으로 인해 불가피한 기일 전 상환의 경우 4. 예금담보대출(은행의 예금, 적금, 부금, 금전신탁 수익권 등을 담보로 하여 전액 은행이 정한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합니다)을 기일 전 상환하는 경우 5. 정책자금대출을 기일 전 상환하는 경우 6. 기한이익 상실, 상계, 기업 구조조정 업무(Work-Out) 등으로 은행이 대출을 기일 전 회수하는 경우 7. 채무자의 사망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p>수익률 중 3개 채권평가회사 통합표의 수익률 다. 단기코픽스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금리 라. LIBOR 1개월물 또는 LIBOR 3개월물 또는 LIBOR 6개월물은 IBA(ICE Benchmark Administration)가 고시하는 금리</p> <p>② 제1항의 시장금리 또는 <u>지표금리</u> 연동대출의 경우 1조에서 정한 변동주기마다 최초 대출상당일(최초 대출상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 말일) 직전 영업일의 시장금리 또는 <u>지표금리를</u> 기준금리로 하여 제1조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p> <p>(삭 제)</p>	해당사항 없는 항목 삭제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u>제 5 조</u> 지연배상금 (생 략)	<u>제 4 조</u> 지연배상금 (좌 동)	조 체상
<u>제 6 조</u> 차용총액 확정 (생 략)	<u>제 5 조</u> 차용총액 확정 (좌 동)	조 체상
<u>제 7 조</u> 감액·정지 <p>① 한도거래 및 분할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제 1 조의 한도금액을 줄이거나 제 2 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대출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 초과 금액은 곧 갚기로 합니다.</p>	<u>제 6 조</u> 감액·정지 <p>① 한도거래 및 분할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곧 갚아야 합니다.</p> <p>1.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의 구체적인 사유 가. 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여 은행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나. 외환유동성 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은행의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은행에 유동성 조절대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라. 기타 위의 사유에 준하는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p> <p>2.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의 구체적인 사유 가. 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2단계 이상 등)한 경우 나. 경영실권자를 변경하여 정상적인 여신거래가 어려운 경우 다.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로 제시된 경우 라. 신문, TV 등 공신력 있는 매스미디어에 본인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뉴스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마. 본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p>	조 체상 여신거래약정서 (기업용) 약관 반영
<u>제 8 조</u> 인지세의 부담 (생 략)	<u>제 7 조</u> 인지세의 부담 (좌 동)	조 체상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제 9 조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p> <p>① 본인은 한도거래 여신 또는 외화대출의 경우 여신과목별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여신과목</th><th>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th></tr> </thead> <tbody> <tr> <td></td><td><input type="checkbox"/> 약정한도 미사용금액(즉, 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 \times ()% \times 운용기간/365(윤년은 366, 외화대출은 360)</td></tr> <tr> <td></td><td><input type="checkbox"/> 약정한도 미사용금액(즉, 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 \times ()% \times 운용기간/365(윤년은 366, 외화대출은 360)</td></tr> <tr> <td></td><td><input type="checkbox"/> 약정한도 미사용금액(즉, 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 \times ()% \times 운용기간/365(윤년은 366, 외화대출은 360)</td></tr> </tbody> </table> <p>②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등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좌대출 및 통장식 한도거래대출의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은 전월 결산일 익영업일로부터 금월 결산일까지 매일의 적수에 대한 평잔입니다. 2. 제 1 호의 대출 이외의 한도거래여신에 대한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은 미사용수수료 최종납입일의 익일부터 납입할 날까지의 매일의 잔액에 대한 평잔입니다. 3. 「약정한도평잔」은 운용기간 중 약정한도의 평잔입니다. <p>③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좌대출 및 통장식 한도거래대출은 결산일 익일 또는 약정해지일에 대출약정 한도금액 이내에서 대출원금에 가산합니다. 다만, 잔액이 예금일 경우에는 등 예금에서 차감합니다. 2. 대출약정 한도금액 부족으로 수수료가 일부라도 원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곧 변제하거나 해당 모계좌에 변제를 위하여 입금하기로 하며, 입금된 자금은 부족한 수수료 변제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3. 제 1 호의 대출 이외에 이자원가일이 없는 한도거래여신은 한도내 개별대출 실행시 또는 약정해지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4.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납입지연시에는 은행은 추가여신 취급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p>제 10 조 상환통화 및 환율</p> <p>외화대출의 원리금을 차용통화 또는 원화로 상환할 수 있으며, 원화로 상환하는 경우 적용 환율은 상환 당일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에 의하기로 합니다.</p>	여신과목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input type="checkbox"/> 약정한도 미사용금액(즉, 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 \times ()% \times 운용기간/365(윤년은 366, 외화대출은 360)		<input type="checkbox"/> 약정한도 미사용금액(즉, 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 \times ()% \times 운용기간/365(윤년은 366, 외화대출은 360)		<input type="checkbox"/> 약정한도 미사용금액(즉, 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 \times ()% \times 운용기간/365(윤년은 366, 외화대출은 360)	(삭 제)	해당사항 없는 조항 삭제
여신과목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input type="checkbox"/> 약정한도 미사용금액(즉, 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 \times ()% \times 운용기간/365(윤년은 366, 외화대출은 360)									
	<input type="checkbox"/> 약정한도 미사용금액(즉, 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 \times ()% \times 운용기간/365(윤년은 366, 외화대출은 360)									
	<input type="checkbox"/> 약정한도 미사용금액(즉, 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 \times ()% \times 운용기간/365(윤년은 366, 외화대출은 360)									
	(삭 제)	해당사항 없는 조항 삭제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제 11 조 담보 . 보험 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여신으로 건설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 . 건물 및 그 안의 기타 시설과 함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제공하기로 합니다.	(삭 제)	해당사항 없는 조항 삭제
제 12 조 담보권 설정 (생 략)	제 8 조 담보권 설정 (좌 동)	조 체상
제 13 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생 략)	제 9 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좌 동)	조 체상
제 14 조 자료의 제출 등 (생 략)	제 10 조 자료의 제출 등 (좌 동)	조 체상
제 15 조 기타 특약사항 (생 략)	제 11 조 기타 특약사항 (좌 동)	조 체상
추가약정서(판매기업용)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용)		
(이하 “본인” 또는 “협력기업”이라 합니다)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이하 “구매기업”이라 합니다)의 발주서를 근거로 하는 은행의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을 위한 20____년 ____월 ____일자 여신거래약정서(이하 “원 약정서”라 합니다)에 추가하여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하며, 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문구 수정
(이하 “본인” 또는 “협력기업”이라 합니다)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이하 “구매기업”이라 합니다)의 발주서를 근거로 하는 은행의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을 위한 20____년 ____월 ____일자 포괄한도거래약정서(이하 “원 약정서”라 합니다)에 추가하여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하며, 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제 6 조 (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미래대출의 실행을 제한하기로 합니다. 6. 원 약정서 제 4 조(감액, 정지)에 의하여 본인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	제 6 조 (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미래대출의 실행을 제한하기로 합니다. 6. 원 약정서 제 6 조(감액, 정지)에 의하여 본인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	문구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p>추 가 약 정 서 (판매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p> <p>본인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위한 _____년 ____월 ____일자 여신거래약정(이하 "원 약정서"라 한다)에 추가하여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p> <p>제 4 조 (개별대출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p> <p>④ 대출금이 연체된 경우에는 지급기일로부터 기산하여 <u>대출금을 상환하는 날까지 귀행의 은행계정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부담하기로 합니다.</u></p>	<p>추 가 약 정 서 (판매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p> <p>본인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위한 _____년 ____월 ____일자 <u>포괄한도거래약정</u>(이하 "원 약정서"라 한다)에 추가하여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p> <p>제 4 조 (개별대출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p> <p>④ 대출금이 연체된 경우에는 지급기일로부터 기산하여 <u>대출금 상환일 전일까지 원 약정서 제 1 조 제 1 항에서约定한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하기로 합니다.</u></p>	문구 수정
<p>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기업용) (포괄계약)</p> <p>주식회사 <u>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이하"판매기업"이라 합니다)은 판매기업의 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판매기업이 _____(이하 "구매기업"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등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u></p> <p>제 2 조 (양도할 대상채권 및 피담보채무) 판매기업은 아래의 피담보채무(이하"피담보채무"라 합니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체결한 아래의 기본계약에 따라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일체의 채권(이하"대상채권"이라 합니다)전액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p>	<p>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기업용) (포괄계약)</p> <p>주식회사 <u>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이하"판매기업"이라 합니다)은 판매기업의 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판매기업이 _____(이하 "구매기업"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등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u></p> <p>제 2 조 (양도할 대상채권 및 피담보채무) 판매기업은 아래의 피담보채무(이하"피담보채무"라 합니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체결한 아래의 기본계약에 따라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일체의 채권(이하"대상채권"이라 합니다)전액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p>	문구 수정
<p>피담보채무의 범위</p> <p>은행과 판매기업 당사자 사이에_____년 ____월 ____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및 추가약정서(이하 "여신거래약정"이라 합니다)에 따라 판매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채무 기타 여신거래약정과 관련된 일체의 채무</p>	<p>피담보채무의 범위</p> <p>은행과 판매기업 당사자 사이에_____년 ____월 ____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및 추가약정서(이하 "여신거래약정"이라 합니다)에 따라 판매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채무 기타 여신거래약정과 관련된 일체의 채무</p>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기본계약	물품 또는 용역등과 관련하여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____년 ____월 ____일 체결한 _____계약 및 이에 부수하여 체결한(또는 체결하는) 일체의 계약 등 또는 구매기업과 은행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일체의 <u>매출채권의 원인 행위</u> 등		양도할 대상채권	물품 또는 용역등과 관련하여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____년 ____월 ____일 체결한 _____계약 및 이에 부수하여 체결한(또는 체결하는) 일체의 계약 등 또는 구매기업과 은행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일체의 <u>매출채권</u>		문구 수정 문구 수정 문구 수정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통합약정서(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추가약정서(판매기업용),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포괄계약)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이를 약정함.	본인	(인)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 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상생미래대 연계 상생외담대 통합약정서[포괄한도거래약정서 (기업용), 추가약정서(판매 기업용)(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용), 추가약정서(판매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포괄계약)]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이를 약정함.	본인	(인)

2. 개정 시행일: 2016년 11월 30일

3. 기 거래고객에 대한 적용: 개정된 내용은 개정 시행일 이후 신규, 연장, 갱신 등 약정분부터 적용